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34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박덕흠 · 안철수 · 강승규
서천호 · 구자근 · 고동진
김예지 · 김선교 · 박수민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및 조례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지속적

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2. (생 략) <u><신 설></u> 3. (생 략) ② (생 략)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u> <u>자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u> <u>인센티브 지급사업</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